

제360회 정례회  
2017. 11. 30.(목)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광희 의원 등 6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11월 21일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3일

3.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 다.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구매 확대 개선조치 요구 및 구매실적 공표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 기술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바. 도에 소재하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을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5. 검토의견

### 가.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 3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 정의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충청북도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으로 규정함.
  - 안 제5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구매 계획에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으로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구매실적이 제5조의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애에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 기술지원 및 홍보·마케팅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에는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그 밖에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며,
- 내용 및 절차상 간담회,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도 담당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출되었음.
-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충북도 내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1》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생산품목	지정일
1	프란치스코의 집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 21번길 66(미평동)	장갑, 화장지류	2014.11.21
2	보람근로원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 1205	사무용지류, 행정봉투, 인쇄물	2014.11.21
3	ZAN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2	종이컵, 상자케이스	2014.11.21
4	예심하우스	청주시 흥덕구 용평로113번길 7	일회용품, 화장지류	2014.11.21
5	살림터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3길 24	차류	2014.11.21
6	세하엔	제천시 의병대로45길 60	제과제빵, 장갑류	2014.11.21
7	직지드림플러스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72번길 5	문서파일류, 비누	2014.11.21
8	나눔의터장애인 보호작업장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4-2	현수막, 재생토너, 인쇄물	2014.11.21
9	이름의 터	상당구 미원면 대신1길 49-51	물티슈	2014.11.21
10	영동군장애인 보호작업장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8	현수막, 간판, 과일류	2014.11.21
11	사)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충북재활공장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45-11	전선보호관	2014.11.21
12	하늘재장애인 보호작업장	서원구 현도면 시목외천로 404-19	육류가공품	2014.11.21
13	옥천군장애인 보호작업장	1)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182-13 2)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38-6	제과제빵, PE봉투(비닐봉투류)	2014.11.21
14	춤추는 향기나무 춤추는 북카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19번길 6-2	차류	2015. 2.17
15	희망일곱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정3길 29	상장케이스	2015. 4. 6
16	사)대승복지회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330번길 34	피복류	2016. 1. 8.
17	제천시장애인 보호작업장	제천시 내토로73길 22	문서파쇄, 현수막	2016. 7. 5.
18	WELCO	충주시 동량면 대전조동길 301 충주시 동량면 조동1길 76	견과류	2016. 7. 5.
19	담쟁이장애인 보호작업장	청주시 상당구 미원초청로 715-4	면류	2016. 7. 5.
20	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제과제빵(직접판매만 가능)	2016.12.28

## 《참고자료2》 타 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2012.12.31
부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5.04.01
울산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3.05.01
대구	미제정	
인천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0.11.15
광주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09.08.03
대전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2013.11.0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2.07.02
경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08.12.30
강원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09.10.30
충남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1.03.30
전북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09.04.24
전남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0.12.27
경북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4.04.21
경남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09.07.0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2012.11.12